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 한 21,841,030원의,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8,173,690원의,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2,960,280원[1]의,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2,960,280원의, 선정자 E에 대하여 한 2,579,580원의 각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의 2,960,100원은 2,960,28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4. 9.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redacted]시 [redacted]구 F, G, H, I, J, K, L, M, N 토지의 합유지분 취득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단위 : 원)

처분상대방	취득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A	2011. 8. 3.	19,205,870	1,537,690	1,097,470	21,841,030
B	2011. 8. 3.	926,760	68,960	52,940	1,048,660
	2013. 10. 14.	6,358,950	459,650	306,430	7,125,030
	소계				8,173,690
C	2011. 8. 3.	1,399,580	101,160	67,440	1,568,180
	2013. 10. 14.	1,230,280	91,540	70,280	1,392,100
	소계				2,960,280
D	2011. 8. 3.	1,399,580	101,160	67,440	1,568,180
	2013. 10. 14.	1,230,280	91,540	70,280	1,392,100
	소계				2,960,280
E	2011. 8. 3.	1,059,820	76,600	51,060	1,187,480
	2013. 10. 14.	1,230,280	91,540	70,280	1,392,100
	소계				2,579,580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26. 기각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11. 28.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을 2015. 11. 28.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4.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장이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은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장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조세심판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장이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 내린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선 정 자 목 록

1. A

2. B

3. C

4. D

5. E. 끝.